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Implementing System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송재현

발간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설립 이래 28년 동안 선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수행과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개발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현재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 왔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놀라울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관련 역외탈세 및 해외 자산 은닉 범죄, 인터넷 관련 새로운 신종범죄, 지적재산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이 매년 사상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으며, 실종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새로운 사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매우고,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법안까지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맡아 열정을 쏟은 승재현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제2장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의의 및 배경	9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11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배경	13
제3장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19
제1절 종래 국회 입법 발의 현황	21
제2절 현 제20대 국회 입법 발의안	23
제4장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쟁점	27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29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등록	36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리 및 감독	38

제4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업무 범위	44
---------------------------------	----

제5장 우리나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53
--	----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 -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56
---	----

제2절 규제적인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검토 필요성	64
---	----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77
---	----

제6장 결 론	83
-----------------	----

참고문헌	101
------------	-----

Abstract	103
----------------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실행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 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급속한 사회 발전에 있어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신종범죄에 대처하기에는 국가 공권력이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매우고,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필요하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 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권리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측면으로 접근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상존하고 있는 국민 권익 침해 양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하여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관한 자격시험제도를 만들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 대한 인권의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자질을 담보하고,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권리 침해 발생시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협회를 만들어 이들 협회에서 표준계약서작성, 준법윤리경영지침을 제정,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함으로써 경찰청장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 혹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준법윤리경영준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탐

2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공인탐정협회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형사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마지막 결론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을 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법안의 제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론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 연구 목적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놀라울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관련 역외탈세 및 해외 자산 은닉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새로운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의 부가가치는 한 나라의 국운을 변경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첨단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매년 사상 최대의 숫자를 갱신하며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 및 실종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새로운 사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외탈세나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나 세무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의 생사나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을 적법하고 의법하게 찾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첨단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의 대규모 회사 혹은 외국 국가가 피의자로서 수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혐의만으로 국가 공권력이 바로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수사 진행에 앞서 정보 누출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정보를 적법하고 의법하게 확인하여 주는 직업이 바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에서 허용되는 직업군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부터 현 20대국회까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와 관련된 수많은 입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의 자유로 재해석하여 이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허용된다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실행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종래 논의는 복잡다기화 되고 날로 발전하는 사회 현실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과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도입여부에 집중되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함과 동시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규제적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규제는 최소 규제가 아니라 최대 규제를 목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지도 감독이 기관의 권한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책임의 측면에서 살펴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하나의 형사정책 결과와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한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과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주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사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모든 영역이 다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제17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9번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법률안의 모습도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중간보고에서 평가를 해 준 평가위원들도 한결 같이 본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선행연구와 법률안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방향을 지적해 주셨다. 첫째 연구 분량을 늘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째, 외국의 입법례도 쟁점별로 정리하면 족하고 별도의 장을 만들어 정리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쟁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살펴 과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피고, 현재까지 수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법이 안 되었는지에 천착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중간평가에 나온 지적사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내용과 법률안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최소분량으로 정리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관한 실행방안과 그 실행방안에 가장 합치하는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의의와 배경을 살피고, 현재까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정리 - 제20대 국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 하고 난 뒤 현재까지 공인 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쟁점 - 도입문제, 특히 지도 감독의 문제 - 을 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쟁점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을 모색 - 직업선택의 자유 대 사생활 침해의 기본권 충돌, 규제적 측면에서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성찰(권한에서 책임으로) 그리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 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모색을 통한 「공인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여 형사정책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의의 및 배경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및 배경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수많은 정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통일된 의견은 없는 듯하다. 종래에는 “‘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웬지 그늘지고 비현실적으로 비추어 진다는 점에서 ‘민간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민간조사란 사인의 다양한 권리 구현을 위하여 사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법적 조사 및 정보 수집을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¹⁾과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 생경하다는 점에서 익숙하면서 신뢰성을 부각하는 명칭인 ‘공인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²⁾이 있다.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³⁾의 명칭이 「공인탐정법안」이며, 2017년 이완영 의원에 의하여 대표 발의된 법률안⁴⁾의 명칭 역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와 대한민간조사협회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2017년 학술세미나에서도 “공인탐정제도 및 보안산업 발전방향”으로 주제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문에서는 ‘공인탐정’, ‘공인탐정업’, ‘공인탐정업법’이라는 명칭과 함께 종래 많이 사용되고 통용되었던 ‘민간조사’, ‘민간조사업’, ‘민간조사업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⁵⁾

1)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 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2007, 202면.

2) 김순석, “한국 공인탐정 제도의 입법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15권, 제4호), 2016, 6면.

3) 의안번호 2216

4) 의안번호 7974

2017년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2017년 학술세미나에서는 학문적 입장에서 탐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탐정’이라고 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민간조사에 대한 정의로는 “검·경찰과 같은 국가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적으로 사건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조사”로 정의하고 있다.⁷⁾

법률안에 나온 공인탐정과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면 2017년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공인탐정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탐정’이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탐정업자’란 공인탐정업의 등록을 한 공인탐정과 인가는 받은 민간조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에 의하면 ‘탐정’이라고 함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또한 윤재옥 의원의 법률안에는 “①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②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③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공인탐정의 업무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¹⁰⁾

다만 2015년에 경찰청에서 발간한 입법정책 설명 자료인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5)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으로는 2016년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로 된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이준복,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합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경찰학 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49호), 2017, 37면.

6) 정덕영, “공인탐정제도의 발전방향”,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2017년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집, 14면.

7) 김향겸,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2면.

8) 법안 제2조.

9) 법안 제2조.

10) 법안 제3조.

도입해야 하나?”에 의하면 ‘공인탐정’이라는 용어 대신 ‘민간조사사’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간조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민간조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배경

I. 급변하는 사회의 발전과 복잡화

최근 우리나라는 놀라울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도 국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되고 있다. 더욱이 매년 해외여행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으며, 실종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발전함에 따라서 역외탈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규모의 사업이 매년 해외국가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해외 기업을 누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특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¹¹⁾

해외에서 발생한 국제범죄나 실종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신고를 하여도 국가 수사력의 인력과 국내사건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은 사실상 스스로 해당사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역외탈세나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 나라의 경제구조나 세무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수집하고 난 뒤에 비로소 사법당국이 그 국가의 사법당국에게 일정한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인력이 확충되어

11)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경제사범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누출에 있어서 자료 수집영역이다.

국내사건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실종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나라에 가서 실종의 골든타임 안에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이 구성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국가가 이러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

역외탈세를 추징하고 은닉된 해외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것이다. 즉 내사와 관련된 영역에서 국가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최첨단 개발 기술이 누설되고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첩보를 통해 개발기술이 누설되고 그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국부가 누출된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을 빼어내기 위해서 주요 개발자와 접촉하거나, 첨단기술의 현실화 및 상용성에 대한 접근은 형사소송법상의 예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 명확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수사가 어렵다. 더욱이 특히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외국의 대규모 회사 혹은 외국 국가가 피의자로서 수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혐의만으로 국가 공권력이 바로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개연성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범죄사실을 국가기관에게 알리고 있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전면에서 공개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업 비밀 누출 사건 등에서 매우 유용하다.¹²⁾

2017년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법취지에서 밝히고 있다.¹³⁾

12) 이준복, 앞의 논문, 41면.

13) 2017.7.1.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안

II.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가 큰 영역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논의는 2014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등 ‘신작업 발굴·육성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관련 법안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관계협의체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4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지도·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국무조정실에서는 ‘정책수립’과 ‘관리집행’ 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수립 업무를 양 기관 참여위원회에 두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관리집행’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법무부, 경찰 양 기관 모두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6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 청년·여성 일자리 수요 발굴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및 경찰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민간조사제도를 일자리 수요 발굴과제로 포함시켜 회신을 하였다. 이후 2016년 6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과제 선정을 하고 이후 2016년 7월 25일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연구(사설탐정, 개인간대출전문가, 동물간호사)’ 과제 착수보고회가 진행되었다.¹⁴⁾

2016년 12월 30일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발간된 『신작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연구 보고서』¹⁵⁾에 의하면 “민간조사원이 합법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14)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량·정성적 방법을 토대로 대상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정책 시행으로 예측되는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적 변화 등을 분석·평가하여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권고 제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kli.re.kr/eia/index.do> 참고: 최종접속일 2017.12.30.).

15) 윤석천/김태영/김운호/박상철/김기덕/박진아, “2016년 신작업 규제 완화 고용 영향평가 연구”,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6.12.30., 132면.

둔화되었다가 장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2016년 기준 민간조사원의 숫자가 3,640명에서 규제가 개선된 이후(3년 후)에는 5,444명으로 3년간 약 49.6%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설하면 민간조사원의 규제완화 이후 3년간 직접 고용 창출 효과로는 1,804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직접효과 이외의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 까지 고려하면 총 3,10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¹⁶⁾ 이어서 민간조사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혹은 대인적 문제를 공권력이 모두 해결하거나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조사원이 합법화 되는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을 한다.” 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¹⁷⁾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국회 법안 발의 움직임은 살펴보면 제20대 국회에서 과학 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에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미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번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번의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12건을 법률 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인탐정에 관한 제도 개선이었다.¹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경찰청과 3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경찰청에서 보내준 입법정책자료에 의하면 민간조사업 도입시 한국은 약 1만 5천 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게 되고, 1조 2,724억원의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⁹⁾

Ⅲ. 외국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 활동 현황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정착된 선진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탐정은 대규모

16) 앞의 연구보고서 131면에서는 민간조사원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여 어디까지 민간조사원 업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추정 종사자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업무범위를 협의로 산정하여 추정 종사자를 판단하였다고 함.

17) 앞의 연구보고서, 136면.

18) 의안번호 7974 제안이유

19) 경찰청,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입법정책 설명자료, 2015, 6면. 또한 2014년 노동고용부에서도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 41개 중 공인탐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선정하였음.

자본이 투자된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탐정업체로 알려진 PINKERTON 社²⁰⁾는 3개국 52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 중이며, 직원수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탐정, △경호경비, △위기관리, △채용심사, △보안설계, △경영전략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탐정 분야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내부 조사, △금융조사, △잠복수사, △사이버 수사, △심층면담(심문), △자금추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민간보안산업체인 KROLL²¹⁾社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9개국 50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 중이며, 직원수는 2,000명 이상이다. 사업분야로는 △탐정, △사이버 보안, △감사, △재무조사, △경영전략 수립, △경호경비 등이며, 이중 탐정 분야의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사기 및 기업내부 조사, △금융조사, △사이버 수사, △부패비리 조사, △보유자산 검색,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소송 및 분쟁 대응 등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계 민간보안산업체인 HILL & ASSOCIATES 社²²⁾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4개국에 지사를 운영중에 있다.

현재 앞서 설명한 크롤(KROLL), 핀커톤(PINKERTON), 힐앤어소시에이츠(H&A)가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탐정 관련 기업은 국내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위기관리센터’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²³⁾

IV. 소결

급격하게 발전하고 복잡화된 사회 환경과 고도화된 정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전통적인 범죄와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범죄를

20) <http://www.pinkerton.com/> 홈페이지 참고(최종접속일 : 2018.1.29.)

21) <https://www.kroll.com/en-us> 홈페이지 참고(최종접속일 : 2018.1.30.)

22) <http://www.hill-assoc.com/> 홈페이지 참고(최종접속일 : 2018.1.30.)

23) 이상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 이인기 주최, 2011, 12면; 크롤(KROLL), 핀커톤(PINKERTON), 힐앤어소시에이츠(H&A)의 주요 업무 내용은 경찰청과 진행된 2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논의된 부분이기도 하다.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공권력은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발간한 '신작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혹은 대인적 문제를 공권력이 모두 해결하거나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민간조사원이 합법화 되는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외국의 공인탐정 기업의 활동영역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공인탐정의 법제화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탐정에 관련된 직업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제1절 종래 국회 입법 발의 현황

I . 제17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

먼저 공인탐정에 관한 국회의 입법안 발의는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2005년 9월 이상배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과 2006년 4월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이 있었는데 각 법률안에 대하여 특별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구분	법안명	소관위원회	경과	감독 기관
17대	민간조사업법안 (이상배의원 대표발의, 2005.9.)	행정자치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17대	민간조사업법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2006.4.)	소관위 미지정	임기만료 폐기	법무부

II . 제18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9월에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과 2009년 4월에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이 있었다. 이 중에서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민간조사업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구분	법안명	소관위원회	경과	감독 기관
18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008.9.)	행정안전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중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18대	민간조사업법안 (강성천의원대표발의, 2009.4.)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법무부

Ⅲ. 제19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1월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과 2013년 3월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및 2015년에 다시 윤재옥 의원이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위 송영근 의원 발의 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재옥 의원 발의 입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률안 발의가 이전 국회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직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시하고, 2014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신직업 발굴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난 뒤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에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에 관련 입법안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구분	법안명	소관위원회	경과	감독 기관
19대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2.11.)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19대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201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	법무부
19대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5.11.)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제2절 현 제20대 국회 입법 발의안

제20대 국회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 9월에 다시 윤재옥 의원이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7년 7월에 이완영 의원이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윤재옥 의원의 입법발의안은 2016년 11월 22일 제346회 국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으며, 2017년 8월 28일 제353회 국회 제2차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I. 윤재옥 의원 입법 발의안²⁴⁾

1. 제안 이유

윤재옥 의원의 대표발의 한 「공인탐정법안」의 입법취지에는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이러한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하다.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

24) 본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온 윤재옥 의원 등 12명(의안번호 2002216, 제안일자 2016.09.08.)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의 내용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F6H0Q9X0B8U1Z1E2U5X4Y6E4G0A2, 최종접속일 2018.1.10.).

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제출한다.” 고 밝히고 있다.

2. 주요 내용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인탐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안 제1조에서는 탐정업에 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안 제2조에서 탐정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 바 탐정이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된 탐정과 인가를 받은 탐정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법안 제9조부터 11조에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과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 내용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여섯째,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II. 이완영 의원 입법 발의안²⁵⁾

1. 제안 이유

이완영 의원은 2017년 7월 13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로는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 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다.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정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차원에서 자력구제를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를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심부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인탐정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 실정에 맞게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해당 입법안을 제출한다고 하였다.

25) 본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온 이완영 의원 등 10명(의안번호 2007974, 제안일자 2017.07.13)이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I7B0A7L1R3T1B3V2E7D5T0K5W6Z6, 최종접속일 2018.1.10.).

2. 주요 내용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안 제1조에서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 등 민간조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있다.

둘째, 법안 제2조에서 공인탐정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하였다.

셋째, 법안 제6조에서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법안 제10조에서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법안 제12조에서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인탐정업이 개인의 자영업에서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법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소재를 근절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곱째, 법안 37조부터 41조에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 및 공인탐정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주체를 명시하였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쟁점

제4장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쟁점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²⁶⁾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공인하여 인정하는 공인탐정은 없으며²⁷⁾, 사실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자유업의 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과세를 위한 업종분류상으로는 ‘심부름 용역원’, ‘탐정 및 조사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심부름센터는 약 1,574개로 추정되고 있다.²⁸⁾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7) 업체들이 협회를 결성하여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공인된 자격은 아니다. 현재 민간조사원 사설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협회로는 한국탐정협회(worldspia.com), 한국민간조사협회(pikorea.org), 대한민간조사협회(kspia.or.kr)가 있다.

28) 전문위원 송병철(안전행정위원회), 공인탐정법안(윤재옥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5면(자료 제공 경찰청).

등의 불법행위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심부름센터 등을 양성화하여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17대 국회에서부터 법률안으로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발의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자력 구제를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를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심부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률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논의

심부름센터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탐정업을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양대 축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제도화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1월 29일 성명서에서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유발할 뿐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검·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공인탐정제도는 그 자체로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인탐정법상 공인탐정의 업무는 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산 추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인탐정이라고 하나 그 조사 방식은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 등 사설탐정과 다르지 않아,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 도청, 비밀촬영 등 공인탐정의 조사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공인탐정법안은 경찰공무원, 검찰청 등 법률이 정한 국가 기관에서 10년 이상 수사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1차 시험 면제 특권을 부여하고 경찰청장에게 탐정업 등록권한 및 탐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전직 검·경 수사관 등에 대한 예우를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 없이는 중요 개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경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

고 국민들에게는 높은 수입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전관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공인탐정법안의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다.²⁹⁾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 찬반론을 각각의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⁰⁾

1. 법률서비스 확대 & 정보접권근

공인 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 조사 제도 도입만으로는 법률서비스의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으며,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지대에 지나지 않고 공인탐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인이 정보 수집·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보공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직역을 창설해 이 분야 종사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빈부의 격차에 의한 민간조사원 활용 기회 차이로 인해 정보격차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서비스만으로는 서민의 법률조력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분쟁, 보험범죄, 최첨단 산업, 저작권, 분식회계, 국제 실종 등 복잡하고 발전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와 관련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이 곧 이들이 종래 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위법행위는 법제도의

29)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공권력의 연결성을 해치는 공인탐정 법안을 반대 한다.”, 2016. 11. 29. 내용 발췌(성명서라는 점에서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성명서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인용함); 대한변호사협회는 2005년 민간조사업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

30)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의견은 연구자가 진행한 공인탐정협회 관련 회장단 및 교수님, 법무부, 경찰, 변호사협회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도출한 목차임. 도입에 있어서 가장 난색을 표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

도입을 떠나 이미 타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도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인에 불과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게 광범위한 정보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편법적인 심부름 센터의 운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도입만으로 사생활 침해 등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적 발상이며, 오히려 공인탐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법을 가장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행태가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관련 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문회의에서 제출된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에서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탐정법안은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정보화 사회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고, 정치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문제가 된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 시점에 국민 사생활 뒷조사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인탐정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인탐정제도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사찰과 정치적 여론 물이를 위한 국민사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며, 공인탐정법안이 제정 되면 공인 탐정이라는 미명하에 현재에도 만연해 있는 심부름 센터, 홍신소 등의 불법행위가 합법을 가장하여 더욱 조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³¹⁾

3. 다른 지역의 법률과 충돌 발생

공권력 및 다른 지역과의 갈등 발생 문제로 경찰 등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31) 본 내용은 자문회의에서 받은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부탁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업 도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전부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직무이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된다면 기존 직업에 대한 침해로서 직업 간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³²⁾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공인탐정법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구 신용사업법(현행 신용정보보호법)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³³⁾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³⁴⁾ 특히 구체적으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³⁵⁾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민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기록, 제공,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치정보법에서도 “국민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³⁶⁾ 뿐 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우편물의 검열·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현재 공인탐정 등의 업무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산 추적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영역이라면 개인정보의 수집행위, 소재파악, 도청, 촬영 등으로 인한 정보수집은 일응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³⁸⁾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업으로

32)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12월, 석사학위논문, 47면.

33) 대법원 1994.8.26. 94도780.

34)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4호, 제50조 제3항 제3호.

35)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5호.

36) 위치정보법 제15조

3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8)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게 자문회의 때 제공된 자료 그대로 인용하여 밝혔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³⁹⁾는 점에서 공인탐정이 이와 같은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변호사법에도 저촉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⁴⁰⁾

그러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역의 충돌은 현재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며, 법률상의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가 최우선의 목표라는 점에서 법률전문가 보다 비용이 저렴한 공인탐정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본다.⁴¹⁾

4. 경찰공무원 등 전관예우, 전관비리를 조장한다는 의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 협회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에 따르면 공인탐정법안은 경찰공무원, 검찰청 등 법률이 정한 국가 기관에서 10년 이상 수사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게 부여한다면 명백히 전관예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유착관계

39)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0)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게 자문회의 때 제공된 자료 그대로 인용하여 밝혔다.

41) 김은정/박영만,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이견 및 도입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4호, 2016, 41면.

없이는 중요 개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경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전관비리가 발행할 수 있다.

공인탐정법안은 경찰 수사권의 비독립성, 부족한 인력 등 수사기관의 문제를 민간 탐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퇴직 검·경 수사관 등에 대한 전관예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공인탐정법안이 도입된다면 국민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응당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검·경 수사관 출신 탐정들에게 의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불필하게 비싼 수임료를 부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인탐정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검·경 수사관 출신에게 1차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된바 없으며,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이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²⁾

II. 소결

복잡다기한 사회 발전 현상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수 많은 범죄에 대하여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모든 사건·사고를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기하는 반대의견도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쟁점으로는 첫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기존 심부름센터 등에서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

42) 경찰청 자문위원의 의견

논문제목과 법안제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논문과 법안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만 집중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하는 불법성을 어떠한 방향에서 규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불법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규제방향에 방점을 두기로 한다.

둘째, 변호사·신용정보보호법 등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업무 영역을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므로 이 분야에 대하여도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불법성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를 통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매우고 피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자격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 업체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 및 통제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자격 부여,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윤리경영 그리고 공인탐정 및 민간조사원 혹은 업체가 불법을 자행한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에 관한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등록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있어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공인탐정업 혹은 민간조사업업을 함에 있어서 신고제도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제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탐정업 혹은 민간조사업업을 자유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신고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나 탐정업 혹은 민간조사업이 업무가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탐정업 혹은 민간조사업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신고제 보다 등록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의 대립이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 발의된 국회입법안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등록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등록에 관한 논의

1. 국회입법발의안

국회의 발의 입법을 살펴보면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및 이완영 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모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입법화 하고 있다.

2. 비교법적 고찰

비교법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Alabama, Alaska, Idaho, Mississippi, Pennsylvania, South Dakota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탐정업에 대하여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⁴³⁾, 프랑스의 경우 1983년 「안전확보를 위한 사적 업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초창기에는 민간조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적용되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 소재지 지방행정기관에 본사의 주소, 민간조사원 성명 등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이내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안전확보를 위한 사적 업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민간조사업의 인가제도 및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⁴⁴⁾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2006년 전까지 탐정업에 대하여 자유업으로 규제

43) 송병철,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안 공인탐정법안 검토보고서, 2016, 14면.

44) 이하섭,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11권 제4호), 2012, 275면(본 논문에서는 1983년 제정된 안전확보를 위한 사적 업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허가제도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에 개정되어 허가제가 도입된 것으로 사료됨, 현재 법무부 수탁용과제로 민간조사업 관련 해외입법례를 진행하고 있음. 본 연구와 해당 연구가 사실상 외국입법례 부분은 동일 주제로 동일 내용이 중복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두 연구 내용에 동일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연구윤리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도 본 연구에는 외국입법례가 주요 연구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2차 문헌을 주로 참고자료로 하여 진행함).

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탐정업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남과 동시에 개인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6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탐정업이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위원회에 상호(명칭), 성명, 주소 및 영업소의 명칭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

II. 소결

일본이 민간조사업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대화 이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흥신소 등이 설립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부흥과 함께 탐정업이 급성장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인탐정 및 민간조사업업을 위해서는 모두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하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경비업을 등록제로 운영할지는 신고제로 운영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판단된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경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또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신고제도 보다는 등록제도가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리 및 감독

2017년 8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353회 행정안전소위 제2차 회의에서 천우정 전문위원은 “탐정업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출되기 시작하였는 바 제출된 법률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느 기관에 부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⁴⁷⁾ 그렇다면

45) 강영숙,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8호), 2006, 349 ~ 350면.

46) 임중호,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15면.

47) 제353회 행정안전소위 제2차 회의록, 27면.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4시09분) 27면. 천우정 전문위원 진술.

또하나의 쟁점으로는 공인탐정을 도입하는 경우 그 관리 감독의 주제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및 감독 주체에 대한 논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관리 및 감독의 주체에 관한 쟁점은 법무부와 경찰청 민간협회 삼자의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협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부처 입장 및 협회에서 주장하는 논거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입법화 된 법률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있어서 관리 및 감독 주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1. 법무부의 입장⁴⁸⁾

법무부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고, 경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우려, 법률사무 관련 업무 특성 고려 필요

공인탐정업무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고, 법률사무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와 법률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관리·감독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찰청 관리·감독 시 유착관계가 발행할 우려가 있음

전직 경찰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탐정을 경찰청장이 관리·감독할 경우 전·현직 경찰간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공인탐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48)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임.

소홀히 될 수 있다.

(3) 변호사 업무와 충돌 조정 필요

민간조사 업무는 변호사 업무의 직역과 중복되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업무를 감독하는 법무부가 통합하여 관리·감독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지역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4)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 또는 그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경찰청의 입장⁴⁹⁾

(1) 탐정은 준 수사업무로 볼 수 없음

탐정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사실조사를 대리할 뿐 수사기관에 부여된 강제처분 등 특별한 직무 수단이 인정되지 않아 사법작용 내지 준수사업무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전문분야의 사실조사 활동에 대하여 각 소관부처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조사에 대하여 의료사고조사관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손해사정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신용조사를 위하여 신용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경찰청이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없음

먼저 지금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유사업무 경험자에 대하여 일부시험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제제도가 현직 경찰관 대한 혜택이자 결국 이들 현직 경찰관이 퇴직시 탐정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향후 탐정을 할 때 전·현직 경찰간의 유착의 우려를 표시하는 입장이 있는데 국내 주요 자격제도인 법무사·세무사·관세사 등도 유사 직종에 근무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

49)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 및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고 있는 바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직역에 대한 우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 국가시험제도에서 유사업무 경험자에 대한 일부 시험 면제는 일반적인 형태인 것이지 공인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행정사법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경력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⁵⁰⁾

그러므로 탐정업무의 특성상 경찰·검찰·국정원·군기무사·정보기관에서 일정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관계 기관의 내·외부의 모멘텀을 만들어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이 탐정업에 유입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공인탐정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사건관련 기록에 관한 자료는 모두 전산화되어 있으며, 이를 조회하는 경우 결제를 통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물론 사후 조회내역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사후 감사를 통하여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의하면 경찰정보통신망 접속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회내역 확인검증 시스템’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통신망 조회내역 감시하고 있으며 내사·수사 사건의 정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보관·관리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유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현직 경찰간의 유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50) 현재 2016. 2. 25. 2013헌마626.

(3) 민간조사업의 분야는 현장 행정 지도·단속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민간조사업의 업무 특성상 사생활침해 및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강력한 행정지도·단속 등 통제가 필요하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탐정업이 자유업이었으나, 이들의 불법, 탈법, 위법이 만연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강력한 행정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공인탐정업 등록, 영업장부 비치, 폐업신고 등 일정한 행정사항 관리에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유리하다.

(4) 생활안전국의 업무 분장

유사직역인 경비업 분야를 이미 경찰청 생활안전국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탐정업이 발달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서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을 경찰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3. 민간조사협회의 입장

(1) 민간조사업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업과는 구별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경찰 내부위원회는 경비업과 구별되는 민간조사업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고 업계의 준법경영과 자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업 협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민간조사협회에 관리 감독의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그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대한법무사협회와 같이 공식적인 대한민간조사협회 혹은 대한 공인탐정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한다.

4. 공인탐정법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입장

2013년 3월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전문의

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관리 감독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기존의 법률안에서 누구에게 관리감독권을 줄 것인지는 탐정업무의 실질적인 업무와 가장 밀접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⁵¹⁾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탐정을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탐정업의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 유사한 직역에 관한 관리감독 노하우, 신진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⁵²⁾ 먼저 비교법적 검토로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i) 주(State)나 지방(Local)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ii) 주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 iii) 주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나, 주 법무부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Kansas주 한곳에 불과한 데 비해, 주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는 Connecticut, Delaware, Maryland 등 9개 주에 달하고 있다는 점⁵³⁾, 국가경찰 임무와의 관계성, 효율적 관리 등을 감안할 때 경찰청이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며, 법무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2조에서 업무 범위를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인탐정업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⁵⁴⁾

II. 소결

사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감독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각 부처의 권한 다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감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가에 모아져야 한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이 언제나 누구의 감시에 노출되어 있다면 공인탐정 혹은

51) 임중호,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4면.

52) 송병철,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의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면.

53) 송병철 위 검토보고서 15면.

54) 제353회 행정안전소위 제2차 회의록, 27.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4시09분) 27면. 천우정 전문위원 진술.

민간조사제도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한변호사 협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관리 감독기관은 관리 감독을 해태를 통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듭 밝히는 바이지만 연구자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국민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도의 도입이 현재의 심부름센터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국가가 인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 그러므로 관리 감독의 영역은 규제의 측면에서 중복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제4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업무 범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업무 범위는 향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운영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공인탐정과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이유 중 하나가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한 정되어 있는 국가 공권력이 이러한 영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탐정 업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공인탐정 및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미아, 가출인 등에 대한 소재 파악, 도난자산 등의 추적 및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실조사로 본다면 이러한 분야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공인탐정 및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어떠한 방향에서 결정할 지는 매우 중요하다.

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업무 범위에 관한 논의

1. 국회입법발의안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의 법안에 나온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입법안을 비교하면 공통된 분모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분모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결정으로 향후 입법화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업무를 정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하순봉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고려하여 “① 범죄 조사 및 위법, 부당행위의 조사 ②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③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그 책임의 조사 ④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⑤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⑥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등”으로 법안을 발의하였다.

다음으로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2006년 4월에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민간조사업법안」에 의하면 “①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 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②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③ 분실·도난·도피재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④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⑤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 자료의 확보 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2006년 9월에 이상배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민간조사업법안」에 의하면 “①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②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③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④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⑤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⑥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⑦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제17대 국회의 「민간조사업법안」을 살펴보면 2017년 현재에도 고려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와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공인탐정 및 민간조사업이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는 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단순한 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으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소재파악을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입법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의 정보는 가장 기본권침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이다.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2008년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경비업의 업무에 민간조사업무로 “①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②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③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민간조사업법안」에서는 “①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②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③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으로 규정하여 법안을 발의하였다.

제18대 국회의 가장 변화된 모습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업무 범위를 최소화 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된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범위를 미아 실종자 등 사람에게 한정하고, 도난·분실 등의 재산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은 현재 사무장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게 인정하는 것은 사무장에게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

강선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교통·통신수단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다. 그렇다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자의 업무 범위에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과 같이 최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2015년 3월에 송영근의원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①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②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③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④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으로 규정하여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5 9월에 윤재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다만 업무의 기본원칙이라고 하여 “민간조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제17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와 대동소이 하다. 특히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 지위를 사실상 변호사 사무장과 같이 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본 연구자와 동일한 방향에서 진행된

최초의 법안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그 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은 국가기관에서 최대한의 관리 감독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윤재옥 의원의 법안명이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것이 본 연구자와 관점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범위를 너무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특징은 종래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민간조사라는 명칭을 버리고 공인탐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⁵⁵⁾ 먼저 2016년 8월에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에 의하면 공인탐정의 업무로 “①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②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③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⁶⁾

이후 2017년 7월에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공인탐정 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하여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역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⁵⁷⁾

55) 사실상 공인탐정과 민간조사 중 어느 명칭이 더 타당할 것인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민간조사는 개인의 자유업이 강조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므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의 관리 감독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인탐정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며, 향후 법안명도 “공인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타당하다.

56) 2016년 8월에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인탐정법안”의 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미래일자리 창출 과제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실종자 혹은 가출인 소재 파악, 도난, 분실, 도피 자산에 대한 소재 확인 및 의뢰인의 권리 보호 등과 관련된 사실조사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또한 신종범죄에 대처함에 있어서 국가공권력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써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생각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부족하다.

다만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혹은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로 한 것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하는 것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업으로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⁵⁷⁾

2. 비교법적 고찰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각국의 고유한 국민 정서와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먼저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①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죄나 위법행위 그리고 미국 내 주나 지역에 대한 위협행위 조사, ②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신원확인, 습관, 행동, 동기, 소재확인, 친자확인, 친밀도, 거래, 명성, 성격 등의 파악 ③ 목격자나 기타 사람들의 신빙성 확인, ④ 실종자 혹은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 상속자에 대한 소재 파악 ⑤ 분실이나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를 확인해 주거나 찾아주는 활동 ⑥ 화재, 명예훼손, 모욕,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파악을 들고 있으며,⁵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① 미합중국 또는 미(美) 연방이나 주(州)를 상대로 발생되거나 위협이 되는

57)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58) 자문회의를 진행한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의 의견에 의하면 권리 의무의 기초가 되는 정보 수집은 법률 사무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며, 향후 다른 직역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힘.

59) 경찰청 자문위원의 자료에 나온 내용이며, 이 내용은 송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9면에 표에 나온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범죄 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② 특정 개인의 신원조회, 습관이나 행동, 사업관계, (직업)경력, 지식 수준(학력 포함), 성실성이나 신뢰성, 업무 효율성, 조직에 대한 충성도, 활동사항, 교우관계, 계약관계,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 평판이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③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건의 원상회복이나 소재파악 ④ 사람이나 물건의 화재, 명예훼손, 손실, 사고, 피해 또는 부상에 대한 원인 및 책임 규명 ⑤ 재판, 중재, 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 등에 사용하는 증거의 확보 및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⁶⁰⁾

일본의 경우에는, ‘탐정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의뢰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면접에 의한 탐문과 미행, 잠복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탐정업법 제2조). 이러한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영업을 ‘탐정업’이라고 하며, 다만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등 기타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⁶¹⁾

영국의 경우에는 민간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이 특정한 개인의 활동 및 소재 파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시(surveillance), 질문(inquires), 그리고 조사(investigations) 등과 관련된 업무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산업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²⁾

60) 조용철, “민간조사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3호, 2014, 470면 각주 5 재인용

61) 警視庁ウェブページ「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等の概要」参照
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suzuki/tantei/tantei_menu/tantei_gaiyo.html
 (최종검색:2017.12.18.).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探偵業務」とは、他人の依頼を受けて、特定人の所在又は行動についての情報であって当該依頼に係るものを収集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面接による聞き取り、尾行、張り込み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方法により実地の調査を行い、その調査の結果を当該依頼者に報告する業務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探偵業」とは、探偵業務を行う営業をいう。ただし、専ら、放送機関、新聞社、通信社その他の報道機関（報道（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客観的事実を事実として知らせることをいい、これに基づいて意見又は見解を述べることを含む。以下同じ。）を業として行う個人を含む。）の依頼を受けて、その報道の用に供する目的で行われるものを除く。

62) 최선우,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제도적 정비와 민간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55호), 2014, 253면.

II. 소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범위를 살펴볼 때 외국의 입법례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그 나라의 각각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이 법률로 입법화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공인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괄적 열거가 아니라 제한적 예시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① 사회안전분야, ② 보험분야, ③기업보안분야, ④ 법률분야, ⑤ 사이버 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⁶³⁾

63) 경찰청 자문위원 설명

우리나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우리나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고민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3가지 국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국면이 바로 국가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허용여부이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거나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직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압도적으로 중요한 공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국가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규제 부분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공인탐정업과 민간조사제도는 그 제도의 허용여부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즉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속칭 심부름센터 등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만일 공인탐정업 혹은 민간조사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위한 법은 처음부터 탐정 혹은 민간조사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혹은 규제 측면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감독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방치한 경우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국면이 공인탐정과 그 수요자인 국민과의 측면이다. 즉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국민의 의뢰를 받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된 사람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와 의뢰인의 부탁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있어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 혹은 그 법인과 국민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법률은 분쟁 발생 이후의 분쟁 해결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

-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

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제도의 의의

현대적 의미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프랑스에서 1825년 파리 경찰청장이었던 Delaveau에 의해 사립경찰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748년 런던의 치안판사였던 H. Pilding이 창설한 “Bow street runner”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탐정기관이 만들어 졌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1850년 Allen Pinkerton에 의해 시카고에 Pinkerton 국가탐정사무소가 설립되었다.⁶⁴⁾

외국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64)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 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2007, 203면 각주 2번 인용.

유한하지만 인간이 찾고자하는 사실과 정보는 무한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인간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무한대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지만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군이 필요해지고 이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이 간격을 매우는 직업이 바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인류역사와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여 온 직업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를 살펴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용정보업자만이 일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가 소위 탐정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⁶⁵⁾ 개인정보수집을 요청하는 일도 위법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65)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딸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학력, 대학교나 직장에서의 인물 평판 등을 살펴보고 그 됃됨이를 확인하여 결혼을 허락할지 결정하고자 할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받고 국가 권력(경찰, 국정원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학력, 재산관계, 건강상태, 국가관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개인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자신의 직업을 접어 두고 남편 될 사람의 주변사람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탐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둘째,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에서는 아버지와 그 업을 하는 두 사람 모두 두 번째를 선택하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과연 우리는 딸을 둔 아버지가 오로지 딸의 선택만을 믿고 30년을 소중하게 기른 딸을 그냥 보내야하는가? 딸이 선택한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위의 기본적인 학력 및 평판을 알아보는 것이 과연 처벌 받아야 할 만큼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가?

대낮에 빈 가정집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약 100여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 물건이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물건이라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단순 재물 절도사건에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여 피해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당해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만들어 절도사건에 투입하는 경우가 과연 몇 건이 될까?

단순재물사건에 경찰서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여러 사정상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의 전통을 담고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격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전담인력을 꾸려 대응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절도 사건의 증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전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면 이를 누가 나쁘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절도사건 해결에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수집하여 준다면 이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I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왜곡

1.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련 입법 경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민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알고 싶은 사실과 정보를 업자에게 요청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용고지업취제규칙」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신용고지업이 존재하였으며, 5.16 군사혁명이후 1961년에 「홍신업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종래 허가 받은 신용고지업이 홍신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 홍신업을 다루는 홍신소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상의 자산 및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실 혹은 정보를 의뢰인에게 알려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 그리고 홍신소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기관은 관할 경찰서장이었으며, 관할 경찰서장은 홍신소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홍신소는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불륜관계 조사, 채무자 행방조사 및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자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7년 「홍신업단속법」이 폐지되고 「신용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홍신업단속법」에서는 홍신업자만이 개인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되어있었지만 신용조사법에서는 신용조사자 뿐 만 아니라 신용조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타인의 의뢰를 받아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 신용관계 이외의 사생활을 조사한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신용조사업법」이 1995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신용업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거나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⁶⁶⁾

66)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 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2007, 203 ~ 204면 참고.

2.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왜곡 현상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을 우리나라 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것은 그간 흥신소라는 곳에서 자행하여 온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가 이유이다. 사실 흥신소에서 하는 업무인 타인의 상거래상의 자산 및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실 혹은 정보는 결코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경제관련 정보이다. 타인의 상거래상의 자산과 금융 등 경제상의 신용을 알아야 계약과 관련된 위험성을 판단하여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오히려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흥신소 혹은 현재의 신용정보업에서 허가하고 있는 타인의 상거래상의 자산 및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실 혹은 정보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직 폭력배 등과 결탁된 흥신소 혹은 속칭 신부름센터에서 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등의 소재파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을 동원한 채권 추심, 개인의 사생활 관련 사실 조사 등으로 인하여 군사정권하에서는 「흥신업단속법」을 만들어 흥신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활동을 억제하려 하였고, 이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 시스템 검토는 논외로 하고, 당장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신용조사업법」으로 개정하여 누구도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현상에 있어서 당장 요구되는 경제관련 이외의 정보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불허한다면 사회는 불안전 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추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해결 할 수 없는 분야를 민간에 넘기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국가공권력의 공백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Ⅲ.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거나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해석에 의하면 현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혹은 사생활을 조사는 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헌법 제 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세 시민사회의 출범과 함께 비로소 쟁취된 기본권으로서 중세 봉건적 신분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여러개의 판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되지만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제한의 방법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⁶⁷⁾

정리하면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직업결정의 자유는 직업종사의 자유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이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지만 제한의 정도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67)1993. 5. 13. 92헌마80

현재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혹은 사생활을 조사는 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위 판례에 대입하면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

첫째, 직업 개념으로 헌법재판소는 ‘생활수단성’, ‘계속성’을 개념표지로 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혹은 사생활을 조사는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설사 ‘공공무해성’까지 직업의 개념요소로 본다고 할 지라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은 직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공무해성’이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청부살인업, 마약밀매업, 매춘업 등을 들 수 있는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이 그 자체로 불법성이 심각하여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삶의 보람이요 생활의 터전인 직업을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케 함으로써 다양한 인격의 발현, 행복추구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실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경제·사회질서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이념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기본정신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서 볼 때 설혹 이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⁶⁸⁾

직업자유 제한에서 적용되는 단계이론 즉 직업자유 제한은 정도가 낮은 단계부터 직업행사의 자유제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제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제한이며, 여기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일정한 자격과 결부시켜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전제로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직업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기본권 주체의

68)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로 직업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가장 심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이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압도적으로 중요한 공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가능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일 때 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⁶⁹⁾

이러한 현재 판례를 고려한다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하며, 공인 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이 일견 명백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IV. 소결

헌법재판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 판례를 고려하면 현재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모든 국민에게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혹은 사생활을 조사는 하는 일을 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4호 단서에 의하면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없다. 만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마련된다면 단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로 예외사유가 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종래 발의된 입법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1차 시험 일부 면제조항은 문제가 있다.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안 제7조는 ①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직원 중

69) 현재 2002. 4. 25. 2001헌마614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특별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일차시험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다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개방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직업결정의 자유에 가장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자격증 취득은 매우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여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일정기간 직역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그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추정은 가능해도 그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정으로 확신을 대신할 때 국민은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불신으로 다가설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가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퇴직 경찰관 지업 만들어 주기 혹은 경찰의 전관예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법에서 일차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뿐 만 아니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경찰학과, 경비학과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층 더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규제적인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검토 필요성

우리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하는 경우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즉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하는 실행방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위험성이 있는 탐정에 대하여 결코 고운 시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흥신소와 현재의 심부름센터가 한 여러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업이라 할지라도 그 업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어떠한 방법에서 방지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법률안에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현재 제안된 법률안의 명칭은 「공인탐정업법」,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명명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안 명칭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법안이다. 어디에도 이러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서 발행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왜 법안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자에 대한 국민의 의심과 불신이 확신과 믿음으로 변경될 때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차단한다는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혹은 규제 측면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실행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견이 존재하는 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은 요원하다고 보인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당위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공인탐정과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및 감독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의 문제로 전환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종자, 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또 다른 국민의 다양한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및 감독은 최대한 다면적이고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 경우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게도 연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심과 불안 해소

1.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17대 국회에서부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속 입법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탐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불식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종래 흥신소가 자행한 불법적인 개인 사생활 침해 그리고 조직 폭력배와 결탁하여 폭력 등으로 얼룩진 심부름센터의 위법을 철실히 경험하여 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만들어 지는 경우 종래와 같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이 이제는 합법화 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후 종래의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신용관련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여러 사실들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어 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민간조사업에 대한 진정 혹은 불안이 증폭되자 관할公安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의 국가 규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의 의심과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법안의 재 네이밍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의 명칭을 살펴보면 「공인탐정업법」,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명명되어 있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안 명칭으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잠재울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하는 측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안의 명칭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여 법안의 목적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불법과 위법을 방지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가 올바르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⁷⁰⁾

I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권한의 문제에서 책임의 문제로 인식 전환

1.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리 및 감독권에 대한 이견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및 감독권을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법무부는 앞서 공인탐정 및 민간조사제도의 쟁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 업무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고, 법률사무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와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관리 및 감독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전직 경찰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할

70)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5.11.)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규제적 측면을 강조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관리라는 측면은 정상적인 과정을 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을 뿐 민간조사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조사원을 경찰청장이 관리 및 감독할 경우 전·현직 경찰간 유착 등 관리 및 감독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민간조사 업무는 변호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어 변호사 업무를 감독하는 법무부가 통합하여 관리, 감독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직역간 사회적 갈등 방지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법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소관사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서비스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가출·실종자 등 소재확인, 분실·도난 물건의 소재확인 등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 사무이지 법무부의 소관 사무는 아니라는 점, 민간조사업의 업무 특성상 사생활침해 및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강력한 행정지도·단속 등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사직역인 경비업 분야를 이미 경찰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 외국의 경우에도 민간조사업과 경비업을 단일한 경찰 기관에서 관리 및 감독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점, 특히 민간조사업 도입 시 외국 기업의 진출, 국내 경비업체의 민간조사 분야로의 사업 확장 등이 예상되는 바,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민간조사원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조사 활동을 대리할 뿐이며, 이미 전문 분야의 사실조사 활동은 법무부가 아닌 각 소관부처 즉 의료사고조사관은 복지부에서, 손해사정사 및 신용조사업자는 금융위에서 관리 하에 행해지고 있다는 점, 변호사 및 법무사는 법무부, 변리사는 특허청,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 바, 해당부처 출신과의 유착을 우려하여 관리감독 부처를 달리 정한다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청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¹⁾

최근 발의된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에서도 이러한 이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견이 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회의록에서 전문위원이 밝히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이 다 설득력이 있으며,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

71) 경찰청 자문위원의 의견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각 부처의 입장에서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불신 즉 이들이 자행할 수 있는 불법과 위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더 절실한 것이다.

2.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발의 법안의 내용

(1) 경찰청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을 살펴보면 경찰청에게 공인탐정에 대한 자격 부여, 공인탐정업에 대한 등록, 변경, 폐업 관장, 공인탐정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전권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제6조에서는 공인탐정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면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인탐정 선발에 대한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⁷²⁾

제11조에서는 공인탐정의 등록을 규정하면서 공인탐정이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등록된 자가 그 영업을 개업 혹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³⁾

그리고 제41조에서는 경찰청에게 공인탐정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면서 경찰청장은 탐정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탐정업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72)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이완영 의원안도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73)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이완영 의원안도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⁴⁾

제42조에서는 경찰청장에게 공인탐정의 자격취소권을 부여하면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3에서는 경찰청장은 등록된 공인탐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배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청장의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무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19대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에게 민간조사원에 대한 자격 부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등록, 등록 거부, 휴업, 폐업 관장, 민간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전권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제6조에서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면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조사원 선발에 대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

74)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이완영 의원안도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있다.

제9조에서는 민간조사원 등록을 규정하면서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7조에서는 민간조사업자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장관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송영근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자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이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검토

현재 까지 발의된 법안의 모습을 살펴보면 특정 기관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전부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사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선발 권한, 이들 기관에 대한 등록, 변경, 취소 등에 대한 권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독점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어떠한 기관의 장도 그 권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집중은 부패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각 기관의 권한이 남용되거나 잘못 행사된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

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다층적인 통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3.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다면적 규제 제도 마련

- 발상의 전환 : 권한에서 책임으로 -

현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는 기존과 달리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의 논의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ALL OR NOTHING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즉 기관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법무부 혹은 경찰청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 주기식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제도가 더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안전한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모두 알 수 없다면, 적법하고 의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정보와 사실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직접 정보와 사실을 수집할 수 도 있지만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와 사실을 전문적으로 찾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의 존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가 필요한 국민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국민의 권익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하고 위법하게 흘러나가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가 불법하게 수집되거나 오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논의에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관리·감독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논의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정보가 불법하게 수집되거나 오남용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은 중첩적으로 확대하고 관리 감독의 관청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1)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 자격시험 관리 및 감독 주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일정한 자질과 인권의식이 함양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자격으로는 공무담임권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9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과실범, 벌금형 제외), 선고유예의 형을 받은 사람(과실범 혹은 벌금형 제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인탐정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시험의 결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견해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⁷⁵⁾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범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의 관리 주체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관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시험출제 등과 관련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 자격시험제도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과목, 시험문제 출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위원회는 시험 문제 출제 등이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출제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자는 자를 위원의 2분의 1이상 두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75) 2017.7.1.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안 및 2016.9.8.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관리 및 감독의 주체

법무부와 달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관리·감독의 주체로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장이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 받아 이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등록증이 바로 일반국민에게 공신력이 부여되는 첫 번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은 등록을 함에 있어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예는 등록을 거부하여 불법한 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조직적,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수는 3명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공인탐정이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있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회의, 6. 법인의 대표, 7. 자산 및 회계,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설립등기의 내용으로는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

가의 연월일이다.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활동보다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침해의 요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협회의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제도 마련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 혹은 한국민간조사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당 협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불법 및 탈법을 스스로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⁷⁶⁾

부정부패의 척결을 공직 분야에서 뿐 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윤리경영이 정착될 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담합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스스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표준 윤리경영 매뉴얼”을 만들어 각 건설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규제 이전에 기업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지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엄격하고 상세한 윤리 경영 지침을 협회에서 마련하여 개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게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윤리경영지침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를 필요적으로 설치할 것, 윤리감사 규정 및 징계절차를 마련 할 것, 내부고발자 제도를 마련할 것, 윤리경영 실천에 대하여 매년 협회에 알릴 것, 협회는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제도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⁷⁷⁾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는 이러한 윤리 경영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76) 다른 하나는 제3의 국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법인)과 의뢰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발생시 국민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협회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후술하기로 한다.

77) 건설산업 표준 윤리경영 매뉴얼 참고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410&cms_site_id=&sel_tab=&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plaza_moral_2&dataId=30520&pageIndex=1; (최종 접속일 : 2017.1.8. 05시32분)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기업의 보안 관련 정보, 각종의 피해 예방과 회복 등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포렌식 혹은 첨단기술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로 하는 바 협회는 이러한 정보 습득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담당할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4)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관리 감독 책임의 주체

현대 국가의 통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며 이러한 권력이 균형과 견제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제도에서 지방경찰제도의 도입,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서 수사권 조정의 논의도 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기준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경찰의 업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선발과 관련된 권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등록,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교육의 권한을 경찰청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여기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의 관리 권한까지 경찰청장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권한의 집중은 최선의 정책을 이끌어 냄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권한의 집중은 또한 여러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도입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을 방임할 수 없는 것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생활의 침해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이상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실행되기 어렵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인력과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 등 유사한 분야에 대한 관리 노하우를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에게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⁷⁸⁾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과 비교법적 논의는 그야말로 이론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식구 감싸기' 혹은 '가제는 계편'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선발권 등록권 교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다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소속 경찰청 공무원을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안하다.

검찰 개혁의 가장 첫 실마리는 검찰의 비리를 검찰 스스로 도려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교훈은 검찰 개혁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동료의식이 강한 집단사회에서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경찰이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지금까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기본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충돌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무엇인 우선되는지 판단하여 보았다.

현재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는 특정한 영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78) 미국의 경우에도 주 법무부 관할 보다 주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점을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전면적 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마지막 단계인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보다 더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제도는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권리의 측면이 아니라 책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법의 형태도 “공인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은 사인의 다양한 권리 구현을 위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 혹은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 혹은 수집활동을 위해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과 혹은 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법률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향후 의뢰인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 혹은 법인과 분쟁을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여 의뢰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수집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 혹은 법인이 제3자 즉 정보 수집의 대상자 혹은 사실 수집의 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도 분쟁의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과 의뢰인간의 분쟁 해결

1. 계약 당사자의 확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언제나 의뢰인의 청약에 의한 승낙이라는 계약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체결하게 된다.

의뢰인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법령에 따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기록철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사후에 분쟁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를 확인하고 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사건기록철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⁷⁹⁾

2.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서면 교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⁸⁰⁾

79) 2017.7.1.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안 및 2016.9.8.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0)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표준약관)

-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 계약서에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①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②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사항 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①공인탐정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또는 상호) 및 주소, ②계약을 체결하는 공인탐정의 성명 및 계약 연월일, ③사실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④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방법 및 기한, ⑤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⑥의뢰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⑦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첫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정당한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는 수수료에 대한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의뢰받은 업무의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범죄 행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중단하여야 한다.⁸¹⁾

3.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업무 수행 원칙⁸²⁾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하여야 하며, 헌법상의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81)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2016.9.8.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2)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 혹은 법인의 업무 수행원칙의 내용은 현재까지 발의된 9개의 법안이 대동소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6.9.8.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한 것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되,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또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 그 소재에 관한 사실조사 내용은 가출인 또는 실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사진, 그 밖의 자료(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한다)가 도난, 분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II.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과 제3자 간의 분쟁 해결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활동은 제3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형법상 처벌은 물론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책임과 달리 금전 손해배상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가 재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칠 수 있다. 더욱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 등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은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 혹은 법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협회가 공제사업하고 그 구성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결론

지금까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논문과 연구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요청되는 문제를 이론적 측면에서 다루었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본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이며, 형사정책연구원은 대학교와 달리 실제 실행되는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연구하고 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실행방안에 천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형사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실현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해당 형사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형사정책이 형사사법의 정의에 합치되고,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의 입장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해당 형사정책이 필요한지를 가장 처음 논증하였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급속한 사회 발전에 있어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신종범죄에 대처하기에는 국가 공권력이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매우고,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에 합치되기 때문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실행되는 형사정책이 형사사법의 정의에 합치되고,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증하였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

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 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권리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측면으로 접근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상존하고 있는 국민 권익 침해 양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하여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관한 자격시험제도를 만들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 대한 인권의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자질을 담보하고,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권리 침해 발생시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협회를 만들어 이들 협회에서 표준계약서작성, 준법윤리경영지침을 제정,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함으로써 경찰청장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 혹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준법윤리경영준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공인탐정협회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형사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마지막 결론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을 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법안의 제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의 명칭은 “공인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률”(안)⁸³⁾이다.

법률 제 호

공인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업무 수행의 불법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공인탐정업의 준법·윤리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탐정”이란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한 자가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탐정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법인을 말한다.

제3조(공인탐정업무) ① 공인탐정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사이버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영업비밀침해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

83) 입법조사처의 자문을 통해 이미 9개의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법안을 기초 모델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의 일부 내용은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당연히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련된 사실조사

3.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4.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제4조(기본원칙)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하여야 하며,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인탐정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인탐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탐정이 될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인탐정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제7조(공인탐정 자격시험 등) ①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인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③공인탐정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한다. 이때, 2차 시험에는 인성·적성검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④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시험시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인탐정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①공인탐정 자격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공인탐정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과목,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조사원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공인탐정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탐정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①공인탐정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탐정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민간조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공인탐정의 등록

제11조(공인탐정의 등록 등) ①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경찰청장은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공인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영업을 개업·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업한 공인탐정업자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개업·폐업 및 휴업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소 설치 및 명칭 등) ①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인탐정업의 등록을 한 공인탐정은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무소는 1개 이상 개설할 수 없다.

②공인탐정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탐정사무소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등) ①공인탐정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할 수 없다.

②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조사부의 작성·보관) ①공인탐정업자는 사건조사부를 비치하고, 의뢰받은 내용을 사건조사부에 작성해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건조사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뢰인의 신분 확인) 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법령에 따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사항 서면 교부의 의무) 공인탐정업자가 의뢰인과 공인탐정의 업무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탐정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또는 상호) 및 주소
2.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탐정의 성명 및 계약 연월일
3. 사실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4. 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방법 및 기한
5.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의뢰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7.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수집·조사의 제한) 공인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 ①공인탐정업자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공인탐정업자는 의뢰받은 내용의 사실조사 결과가 범죄행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사실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인탐정업무의 수행원칙 등) ①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에게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인탐정업자는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한 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공인탐정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또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 그 소재에 관한 사실조사 내용은 가출인 또는 실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④공인탐정업자는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공인탐정업자는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뢰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탐정업자는 그 의뢰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인탐정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다른 공인탐정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탐정의 업무를 하거나 이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무원) ①공인탐정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공인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9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③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④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탐정업자의 행위로 본다.

⑤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 ①공인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②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및 가입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점직신고) ①공인탐정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경우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인탐정업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등록증 등의 게시) 공인탐정업자는 등록증, 사건조사부,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 사무소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준수 등) ①공인탐정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 업무에서 생성되거나 취득한 문서, 사진, 그 밖의 자료(전자적·자기적 방식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한다)가 유출되거나 불법 도용되지 않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탐정 및 사무원 교육) ①공인탐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탐정과 사무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분기별로 매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기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인탐정법인

제27조(공인탐정법인의 설립)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8조(설립절차)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공인탐정이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구성원 등) ①공인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

②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둘 수 없다.

제30조(정관 기재 사항)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법인 명칭 등) ①공인탐정법인은 공인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탐정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설립등기) ①공인탐정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공인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3조(분사무소) 공인탐정법인은 분사무소임을 표시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집행방법) ①공인탐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탐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인탐정은 해당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공인탐정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공인탐정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설립인가의 취소)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지나도록 구성원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법령을 위반으로 인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6조(해산) ①공인탐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공인탐정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합병) ①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공인탐정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에 관한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공인탐정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공인탐정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인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공인탐정협회

제39조(공인탐정협회의 설립 등) ①공인탐정업자는 그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공인탐정업의 윤리경영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④협회는 공인탐정업자의 위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인탐정업자들의 윤리 경영 의식 함양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경영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공인탐정업자 혹은 법인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22조에 따른 공인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도·감독

제41조(지도·감독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인탐정의 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인탐정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공인탐정업자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탐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2항의 명령을 받는 공인탐정업자 혹은 공인탐정법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42조(자격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등록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등록된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서면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제41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법무부장관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된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표준계약서 서면 불이행은 제외)

4. 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청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2. 제42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3. 제4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혹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검장 혹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청장 혹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26조에 따른 공인탐정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관계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과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①제17조제1호를 위반하여 국가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를 한 공인탐정업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탐정의 업무를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
3.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린 자
5. 제20조를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공인탐정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6.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인탐정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자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의뢰인
4. 제2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6. 제41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한 자

제47조(양벌규정) 공인탐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12조 제3항 또는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탐정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건조사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를 위반하여 검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강영숙,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8호), 2006.
- 경찰청,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입법정책 설명자료, 2015.
- 김원중,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2006
- 김은정/박영만,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의견 및 도입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4호, 2016.
- 김순석, “한국 공인탐정 제도의 입법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15권, 제4호), 2016.
- 김향겸,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 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2007.
-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공권력의 연결성을 해치는 공인탐정법안을 반대 한다.”, 2016.
- 박종수,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1호, 2008.
- 송병철, 윤재욱 의원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의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12월, 석사학위논문.
- 윤석천/김태영/김윤희/박상철/김기덕/박진아, “2016년 신직업 규제 완화 고용 영향평가 연구”,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6.
- 이상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 이인기 주최, 2011.
- 이상원/이승철,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2007.
- 이상철/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

츠리서치 제18권 제5호, 2007.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 제17대 국회 제267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 2007. 4. 16.,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 국회사무처, 제267회국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이준복,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합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경찰학 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49호), 2017.

이하섭,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11권 제4호), 2012.

임중호,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정덕영, “공인탐정제도의 발전방향”,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2017년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조용철, “민간조사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3호, 2014.

최선우,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제도적 정비와 민간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55호), 2014.

홍익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황병돈), “민간조사원(사설탐정)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업법안」과 「경비업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2009

Abstract

A Study on Implementing System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Soung, Jea-hy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cribe effective policies for introducing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Korean context. It is a disheartening reality that the Korean law enforcement agencies, suffering both from budget shortfalls and a lack of personnel, cannot adequately cope with challenges posed by new and evolving types of crimes accelerat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are now increasingly seen as necessary for addressing the particular gap in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uphold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itizens.

Although a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level of public safety, it is not without any drawback. There exists the real danger of breaching privacy laws and individual rights by private investigators. The following regulatory scheme can minimize their potential abuse while maximizing the expected benefit.

Firstly, a national authority made responsible for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ors ought to establish national licensing exams to validate eligible candidates' understanding of law and human rights a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ve work.

Secondly, the authority should foster establishing associations of private investigators. Such organizations can encourage and promote professionalism among affiliated members through the provision of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the Korean Minister of Justice can be made, by law, responsible for checking potential abuse of private investigators.

Thirdly, the authority ought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providing legal means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rivate individuals and private investigators;

statutorily requir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to follow standard contract forms when signing agreements with clients, to comply with code of ethics premised on contractual duties of good faith, and to enroll in cooperative schemes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in disputes.

Lastly, based on the requirements for private investigators, the study proposes a draft legislation with detailed provisions. Such legislation is construed to be both a sufficient and necessary condition to debuting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Korean legal context.

연구총서 17-BB-03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 진 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사)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2279-6760

I S B N | 979-11-87160-84-7 93360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Implementing System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